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공고 제2026-6호

공원녹지 내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 미관 저해 및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무단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원녹지 내 무단 적치 및 점유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06.(금) ~ 2026. 11. 20.(금)
3. **공고사유**: 물건의 무단 적치 및 점유, 점유자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
4. **공고내용**

<table>
<tr><th colspan="6">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th></tr>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46-9번지 내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4">미상(동패동 1746-9번지 내 불법 시설물 적치· 점유한 자)</td></tr>
<tr><td>주 소</td><td colspan="4">미상</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위 당사자께서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46-9 일원 공원녹지대 내 시설물을 무단 적치 및 점유하였음</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위 공원녹지대 내 무단 적치물(의류수거함)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 및 반출하고 공원을 원상회복할 것.</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1) 법적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명령)
2) 조문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6">의견제출</td><td rowspan="5">제출처</td><td>기관명</td><td colspan="3">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도시관리과</td><td>담당자</td><td>공원관리2팀 담당자</td></tr>
<tr><td>주 소</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80, 2층</td></tr>
<tr><td>전화번호</td><td>031-940-8703</td><td>팩스번호</td><td>031-940-8709</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ny1665@korea.kr</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3">2026년 11월 20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대집행」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과 공원관리2팀(031-940-87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6.

파 주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